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군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징계위원회 구성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37호)
- 박군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88호)
- 추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44호)
- 안규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85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6
1.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군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징계위원회 구성 등	6
2.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장성급 장교를 직위에서 해제한 등의 경우 전역되지 아니하도록 규정 등	26

I. 제안경위

1. 윤준병의원안

가.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 20.

다. 회부연월일 : 2025. 1. 21.

2. 박균택의원안

가. 발 의 자 : 박균택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 23.

다. 회부연월일 : 2025. 1. 24.

3. 추미애의원안

가. 발 의 자 : 추미애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 24.

다. 회부연월일 : 2025. 1. 31.

4. 안규백의원안

가. 발 의 자 : 안규백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3. 19.

다. 회부연월일 : 2025. 3.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윤준병의원안

현행 「군인사법」은 영내징계위원회 개최 시 최소 3명 이상의 선임자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사건에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하여 군 수뇌부가 대거 가담하여,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자가 3인 미만이 발생하였을 때는 징계위원회 자체가 구성될 수 없음.

이에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비상임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중 국방부장관이 각 군에서 1인, 합참에서 1인, 민간에서 5인의 군사 또는 법률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 직속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장군 보직 해임 시 자동 전역 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한 초동조치를 할 수 없음. 이러한 법 규정 때문에 군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직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사를 받게 되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관할 군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5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2. 박군택의원안

현행법은 징계위원회 위원을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장과 같은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는 선임인 장교가 3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대장급 군인의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 자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징계처분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되어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비위행위를 행한 군인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 및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불이익 회피수단으로 전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3. 추미애의원안

현행법 및 시행령, 「군인 징계령」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군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중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공관병 갑질 사건, 12·3 비상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와 같이 고위급 장성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 보직해임 및 징계 심의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직해임 및 징계에 대한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 비위 행위자가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과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3항·제4항·제5항 신설 등).

4. 안규백의원안

12·3 비상계엄 사태에 긴밀하게 연루된 고위 지휘관들에 대하여 징계·보직해임 요구가 매우 커지고 있음. 특히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준비하고 시행에도 깊게 관여한 지휘관들은 구속·기소되어 현재 지휘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국방부는 육군 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과 국군정보사령관·국군방첩사령관을 보직해임하였음.

그러나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험적인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비상계엄 당시에 깊게 관여하였던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서는 현행법률상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 보직해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 보직해임된 장교가 일정 기간 이상 새로운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전역하게 되어 군에서의 징계, 조사·수사를 중단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에 상급자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급 장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적 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보직해임된 자가 필요한 징계, 조사 등의 조치가 끝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처분을 받도록 하고, 보직해임된 때에는 해당 계급 장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휘공백 장기화로 인한 안보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7조의2, 제21조 등).

Ⅲ. 검토의견

1.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군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징계위원회 구성 등(윤준병의원안 제58조의2제3항·제4항·제5항·제6항, 박균택의원안 제58조의2제3항·제4항, 제60조의2제3항·제5항, 추미애의원안 제17조의2제3항·제4항·제5항·제8항, 제58조의2제3항·제4항·제5항, 제60조의2제3항·제5항, 안규백의원안 제17조의2제3항·제4항·제7항, 제58조의2제3항)

가. 개정안들의 취지

- 개정안들은 현행법률상으로는 육군참모총장 등 군 최고위직에 대해 징계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없는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들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음.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징계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인 장교의 수가 미달되어 위원회를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①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할지, 또는 기존 위원회를 운영하되 예외 규정을 들지, ② 위원회를 현행처럼 군인으로만 구성할지 혹은 민간위원을 포함할지, ③ 민간위원을 포함한다면 어떠한 인물을 위촉 대상으로 할지, ④ 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이며,

이러한 쟁점은 세 위원회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됨.

□ 현행 「군인사법」 제58조의2¹⁾,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3항²⁾, 법 제10장(징계) 및 제60조의2에 따른 「군인 징계령」 제30조³⁾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대장급 장성에 대한 징계 등 심의에 있어 법령이 규정한 선임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⁴⁾.

□ 이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가능한 입법상 공백을 야기하는 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음.

윤준병의원안은 선임 장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 1) 「군인사법」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 등”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2)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②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기관 또는 부대에서는 위원 중 1명을 법무장교로 한다.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 다만, 법무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3) 「군인사법」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② 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素養)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
「군인 징계령」 제30조(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중에서 항고심사권자가 임명한다. 다만, 항고심사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 4) 「군인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은 현역 군인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며, 각군 참모총장은 동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소속 군 내에서 최고의 서열에 있음. 다른 대장의 경우 진급일자 순으로 서열을 판단하고 있음. 현재 대장급 이상의 장교는 총 8명(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육군 1·3군사령관, 육군 2작전사령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일부 대장급 장교의 경우 선임인 장교가 위원회 구성 최소 인원수에 미달할 수 있음.

경우 국방부장관이 각 군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박군택의원안은 선임 장교가 부족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법조인, 학계 인사, 예비역 장성 등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추미애의원안은 선임 장교가 부족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법조인, 학계 인사 등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안규백의원안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 시 선임 장교가 부족한 경우 국방부차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기타 대장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징계위원회의 경우 대장 계급 장교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구 분	주 요 내 용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	징계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인 장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선임인 장교를 제외하고 부족한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각 군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3항~제6항)
박군택의원 대표발의안	징계·hang고심사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인 장교의 수가 미달되어 징계·hang고심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선임인 장교를 제외하고 부족한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법조인·학계·예비역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3항·제4항, 제60조의2제3항·제5항).
추미애의원 대표발의안	징계·보직해임·hang고심사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인 장교의 수가 미달되어 징계·보직해임·hang고심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선임인 장교를 제외하고 부족한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법조인·학계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함(제17조의2제3항·제4항·제5항·제8항, 제58조의2제3항·제4항·제5항, 제60조의2제3항·제5항).

구 분	주 요 내 용
안규백의원 대표발의안	보직해임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인 장교의 수가 미달되어 보직해임심의를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선임인 장교를 제외하고 부족한 위원은 국방부차관·합동참모의장·각 군 참모총장 및 이외 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징계대상자보다 선임자인 사람의 수가 미달되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제17조의2제3항·제4항·제7항, 제58조의2제3항)

□ 징계·보직해임의 형평성 및 군기 유지 차원에서, 누구든지 징계·보직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보직해임심의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서열이 높은 일부 4성 장군의 경우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현행 법규를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음⁵⁾.

□ 다만, 각 개정안별로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2018.1.11. 군 적폐청산위원회 제8차 회의

나. 개정안별 검토의견

①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군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징계위원회 구성

현 행	윤준병의원안	박균택의원안	추미애의원안	안규백의원안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 ② (생략) <신설>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징계처분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국방부장관 직속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의결을 통해 징계처분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방부장관은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3명에 미달하여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징계위원회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방부장관은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3명에 미달하여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대장 계급의 장교 중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현 행	윤준병의원안	박군택의원안	추미애의원안	안규백의원안
		<u>를 구성하여야</u> <u>한다. 이 경우</u> <u>징계위원회의</u> <u>위원장은 장교</u> <u>인 위원 중 최</u> <u>상위 서열자로</u> <u>하고, 위원 중</u> <u>에 장교가 없</u> <u>는 경우에는</u> <u>국방부장관이</u> <u>지명하는 사람</u> <u>으로 한다.</u> 1. <u>법관·검사</u> <u>또는 변호사</u> <u>로 10년 이</u> <u>상 근무한</u> <u>사람</u> 2. 「<u>고등교육</u> <u>법</u>」에 따른 <u>대학에서 법</u> <u>학 부교수</u> <u>이상의 직에</u> <u>10년 이상</u> <u>근무한 사람</u> 3. <u>예비역 장성</u> <u>등 그 밖에</u> <u>국방 및 군</u> <u>인사에 관한</u> <u>학식과 경험</u> <u>이 풍부한</u>	<u>를 구성하여야</u> <u>한다. 이 경우</u> <u>징계위원회의</u> <u>위원장은 장교</u> <u>인 위원 중 최</u> <u>상위 서열자로</u> <u>하고, 위원 중</u> <u>에 장교가 없</u> <u>는 경우에는</u> <u>국방부장관이</u> <u>지명하는 사람</u> <u>으로 한다.</u> 1. <u>판사·검사</u> <u>· 군법무관</u> <u>또는 변호사</u> <u>의 직에 5년</u> <u>이상 재직한</u> <u>사람</u> 2. <u>군사안보 관</u> <u>련 분야, 정</u> <u>치·행정·</u> <u>법률·심리</u> <u>학·인권 관</u> <u>련 분야 등</u> <u>의 교수·부</u> <u>교수 또는</u> <u>조교수의 직</u> <u>에 5년 이상</u>	

현 행	윤준병의원안	박균택의원안	추미애의원안	안규백의원안
<신 설>	④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비상임 징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1. 각 군 1인 2. 합동참모본부 1인 3. 군사 또는 법률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5인	사람 ④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직인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지명 시 국방부장관이 사 고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면 국방부차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신 설>	⑤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윤준병의원안	박균택의원안	추미애의원안	안규백의원안
<신 설>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들은 징계심의대상자가 대장급 장성으로서 선임인 장교가 3명 미만인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입법상 공백 문제가 존재하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윤준병의원안은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총 9명의 구성원)를 별도로 구성해 각 군별 1인, 합동참모본부 1인(총 4인) 및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고, 안규백의원안의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 중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그러나 합동참모의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과 같이 대장 계급 내에서도 선임인 장교가 3명 미만⁶⁾일 수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결

6) 「군인사법」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② 합참의장은 재임기간 동안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② 참모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국 징계심의대상자의 후임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밖에 없음.

이는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 조직에서 위계질서에 반하는 구조로 비칠 수 있으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또한 후임자가 선임자의 징계를 심의하는 상황은, 향후 인사상 불이익이나 보복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가 3명 미만이어서 현행법상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박군택의원안은 법조인, 법학교수, 예비역 장성 등을 포함한 민간위원을 징계위원회에 위촉하도록 하며, 추미애의원안 또한 민간위원을 포함하되, 법조인 및 군사안보학 등 관련 전공 교수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며, 해병대사령관은 재임기간 동안 해병대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 (서열)

①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생략)

2. 같은 계급에서는 제36조에 따른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 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한다.

3. 제2호의 순위가 같을 때에는 차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하되, 그 순위 또한 같을 때에는 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에 따르고, 그 순위에 따르기 어려울 때에는 임용된 날짜 순에 따른다. 이 경우 임용일이 같을 때에는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의 서열은 다른 군의 장성급 장교(참모총장은 제외한다)보다 우선한다.

④ · ⑤ (생략)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대상]

박근혜의원안	추미애의원안	「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률·심리학·인권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예비역 장성 등 그 밖에 국방 및 군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과의 정합성 및 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군법무관을 포함하여 법관·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학에서 군사안보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박근혜의원안 제3호는 ‘예비역 장성 등 국방 및 군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포함하고자 하나, 해당 기준이 주관적이며 포괄적일 수 있으며, 본 조문이 적용되는 징계대상자는 대장 중에서도 선임자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3호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추미애의원안 제58조의2제4항은 장관의 사고 시 차관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방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직무대리규정」⁷⁾과 동일한 내용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동 규정에 따라 장관의 사고 시 차관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어, 해당 조항의 입법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현 행	수정의견
제58조의2 (징계위원회) ① . ② (생략) ＜신설＞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방부장관은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3명에 미달하여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u>

7)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3조(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등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4조(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현 행	수정의견
<신 설>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교인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 위원 중에 장교가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관·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군사안보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④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방부는 현행법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도 징계 공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들 중 안규백의원안⁸⁾에 동의하는 입장임.

② 보직해임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군인으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

현행	추미애의원안	안규백의원안
제17조의2(보직해임) ① · ② (생략) <신 설>	제17조의2(보직해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	제17조의2(보직해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8) 대장 계급 중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신 설>

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무장교가 보직되어있는 기관 또는 부대에서는 위원 중 1명을 법무장교로 한다. 다만, 법무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자인 장교의 수가 3명에 미달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자인 장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 다만, 법무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국방부차관
2. 합동참모의장
3. 각 군 참모총장
4. 제2호 및 제3호의 직위를 가지지 아니한 대장

	<u>교인 위원 중 최상위</u> <u>서열자로 하고, 위원</u> <u>중에 장교가 없는 경</u> <u>우에는 국방부장관이</u> <u>지명하는 사람으로 한</u> <u>다.</u> 1. <u>판사·검사·군법무</u> <u>관 또는 변호사의 직</u> <u>에 5년 이상 재직한</u> <u>사람</u> 2. <u>군사안보 관련 분야,</u> <u>정치·행정·법률·</u> <u>심리학·인권 관련</u> <u>분야 등의 교수·부</u> <u>교수 또는 조교수의</u> <u>직에 5년 이상 재직</u> <u>한 사람</u> ⑤ <u>제4항에 따른 보직</u> <u>해임심의위원회 구성</u> <u>및 위원장 지명 시 국</u> <u>방부장관이 사고로 권</u> <u>한을 행사할 수 없으</u> <u>면 국방부차관이 그</u> <u>권한을 대행한다.</u>	
<u><신 설></u> ③·④ (생 략) ⑤ <u>보직해임심의위원회</u> <u>의 구성·운영·심의</u> <u>등에 필요한 사항은</u>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⑥·⑦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⑧ <u>제2항부터 제6항까</u> <u>지에 규정된 사항 외</u> <u>에 보직해임심의위원</u> <u>회</u>----- -----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⑦ <u>그 밖에 보직해임심</u> <u>의위원회</u>----- ----- -----.

	-----.	
--	--------	--

□ 앞선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논의와 마찬가지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경우에도 대상자가 대장급 장성으로서 선임인 장교가 3명에 미달하는 경우 보직해임 자체가 불가능한 입법상 공백이 존재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안규백의원안의 경우 국방부차관 및 대장 직위의 위원들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바, 앞선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논의와 마찬가지로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중에서 선임급인 사람을 보직해임할 경우 후임자가 선임자 보직해임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추미애의원안 역시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규율하는 제4항 각호의 문구는 법 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개정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제5항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므로 입법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현 행	수정의견
제17조의2(보직해임) ①·② (생)	제17조의2(보직해임) ①·② (현행과 같음)

현 행	수정의견
략) <신 설> <신 설> ③·④ (생 략) ⑤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 구성·운영 ·심의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무장교가 보직되어있는 기관 또는 부대에서는 위원 중 1명을 법무장교로 한다. 다만, 법무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자인 장교의 수가 3명에 미달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자인 장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교인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 위원 중에 장교가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관·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군사안보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 -----.

□ 국방부는 군인사법이 군인의 신분 및 임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공무원법의 특례적 성격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내부구성원(군인)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규백의원안에서 국방부차관을 제외한 대장 계급의 장교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③ 항고인보다 선임인 군인으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항고심사위원회 구성

현 행	박근혜의원안	추미애의원안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① · ② (생략) <신설>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방부장관은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장교인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 위원 중에 장</u>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방부장관은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장교인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 위원 중에 장</u>

현 행	박근혜의원안	추미애의원안
	<u>교가 없는 경우에는 국</u> <u>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u> <u>람으로 한다.</u> 1. <u>법관·검사 또는 변호</u> <u>사로 10년 이상 근무</u> <u>한 사람</u> 2. 「<u>고등교육법</u>」에 따 른 <u>대학에서 법학 부</u> <u>교수 이상의 직에 10</u> <u>년 이상 근무한 사람</u> 3. <u>예비역 장성 등 그 밖</u> <u>에 국방 및 군인사에</u> <u>관한 학식과 경험이</u> <u>풍부한 사람</u>	<u>교가 없는 경우에는 국</u> <u>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u> <u>람으로 한다.</u> 1. <u>판사·검사·군법무관</u> <u>또는 변호사의 직에 5</u> <u>년 이상 재직한 사람</u> 2. <u>군사안보 관련 분야,</u> <u>정치·행정·법률·심</u> <u>리학·인권 관련 분야</u> <u>등의 교수·부교수 또</u> <u>는 조교수의 직에 5년</u> <u>이상 재직한 사람</u> ④ <u>제3항에 따른 항고심</u> <u>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u> <u>장 지명 시 국방부장관</u> <u>이 사고로 권한을 행사</u> <u>할 수 없으면 국방부차</u> <u>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u> <u>다.</u>
<신 설> ③ (생 략) <신 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u>그 밖에 제3항에 따</u> <u>른 민간위원의 위촉에</u>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 <u>으로 정한다.</u>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u>그 밖에 제3항에 따</u> <u>른 민간위원의 위촉에</u>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 <u>으로 정한다.</u>

□ 앞선 징계위원회 및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에도 대상자가 대장급 장성으로서 선임인 장교가 3명에 미달하는 경우 징계·보직해임에 대한 항고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입법적 공백이 존재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 또한, 앞선 개정논의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징계령」 등 다른 법령,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민간위원 구성 관련 조문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추미애의원안 제4항은 기존 법령 체계 내에서도 동일한 취지가 실현 가능하므로, 입법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의 논의를 고려한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현 행	수정의견
제 60 조 의 2 (항고심사 위 원 회) ① · ② (생 략) <신 설>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방부장관은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장교인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 위원 중에 장교가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관·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군사안보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현 행	수정의견
③(생 략) <신 설>	<u>사람</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방부는 항고심사위원회 구성은 법 개정이 아닌 현행 「군인 징계령」(대통령령)⁹⁾을 개정하여 항고인이 대장 계급의 장교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항고심사 공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법 개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9) 「군인 징계령」(대통령령) 제30조(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 ①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중에서 항고심사권자가 임명한다. 다만, 항고심사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2.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장성급 장교를 직위에서 해제한 등의 경우 전역되지 아니하도록 규정 등(윤준병의원안 제16조의2제2항, 제20조제3항, 박균택의원안 제16조의2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 안규백의원안 제16조의2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

□ 현행법 제16조의2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가 직위해제되거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않거나, 합참의장,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중장 이상의 주요부서장, 병과장 직위의 장교가 직위에서 해임·면직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역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범죄혐의 또는 징계 사유가 있는 장성이 직위해제되거나 직위에서 해임, 면직되는 등에는 자동으로 전역되어 민간인 신분이 됨에 따라 군 내부에서 수사나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각 개정안은 수사 또는 징계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장성을 직위해제하거나 직위에서 해임, 면직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하여, 군 내부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군인 신분을 유지하게 하려는 것임.

□ 장성급 장교가 직위해제, 해임 또는 면직되더라도 자동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하여, 군 내부에서 수사 및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장성급 장교와 비장성급 장교간의 계급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군 복무 중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①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장성급 장교를 직위에서 해제한 등의 경우 전역되지 아니하도록 규정

현 행	윤준병의원안	박군택의원안	안규백의원안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 (생략)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성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	② ----- ----- ----- ----- ----- ----- ----- -----	② ----- ----- ----- ----- ----- ----- ----- -----	② ----- ----- ----- ----- ----- ----- ----- -----

현 행	윤준병의원안	박균택의원안	안규백의원안
된다. <단서 신설>	- 다만, 수사 및 징계의 사 유로 직위 또 는 보직에서 해임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다만, 제17 조의2제1항제2 호 및 제3호에 따라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보직해 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 한다.	----. 다만, 제 17조의2제1항 제2호 또는 제 3호에 해당하 여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 직기간이 종료 된 후 같은 계 급 이상의 다 른 직위에 보 직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 음)	③ (현행과 같 음)	③ <u>장성급</u> ---- ----- ----- <u>다음</u> <u>각 호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u> <u>는 경우에는</u> -- ----- ----- ----- ----- ----- -----

현 행	윤준병의원안	박균택의원안	안규백의원안
			----- -----. 1. 제1항 단서 에 따라 장성 급 장교가 6 개월 이상 외 국에 파견되 는 경우 2. 제17조의2제 1항제2호 또 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직 위에서 해제 되거나 보직 기간이 종료 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 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제16조의2제2항에 관한 개정안들은 장성급 장교가 징계, 조사 및 수사를 이유로 보직해임된 경우 현역에서 전역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개정안들은 직위 또는 보직에서 해임(윤준병의원안),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안규백의원안)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군인사법」에서는 직위해제를 규정하지 않고 법 제17조의2¹⁰⁾에서 보직해임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직해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¹¹⁾,

윤준병의원안의 ‘수사 및 징계의 사유’라는 표현보다는,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라고 보직해임시 전역되지 아니하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인용한 박균택의원안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박균택의원안 각 개정안 단서에 포함된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라는 문구는 이미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해당 문구를 별도로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한편,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장성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보직되

10) 「군인사법」 제17조의2(보직해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군검찰·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대관리 측면에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하 생략)

11) 안규백의원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제3항제2호에 규정된 ‘직위해제’라는 문구는 「군인사법」에 근거가 없는 제도임.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의 하나일 뿐, 군인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제16조의2제3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규백의원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제16조의2제3항제2호의 경우 앞선 제2항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현 행	수정의견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 (생략)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성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② ----- ----- ----- ----- . 다만, 제17조의
<단서 신설>	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장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	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③ 장성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현 행	수정 의견
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2.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경우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여러 개정안들 중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보직해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②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중장 이상의 중요 부서의 장, 병과장을 직위에서 해임·면직할 경우 등에는 전역되지 아니하도록 규정

현 행	박근혜의원안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 ③ (생략) ④ 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 동안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 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단서 신설>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 ③ (생략)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단서 신설>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현 행	윤준병의원안	박균택의원안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① . ② (생 략) ③ 중장 이상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보임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현역에서 전역된다. <단서 신설> ④ (생 략)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다만, 수사 및 징계의 사유로 직위 또는 보직에서 해임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다만, 제17조의 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박균택의원안	안규백의원안
제21조(병과장 임명) ① . ② (생 략) ③ 병과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	제21조(병과장 임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제21조(병과장 임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현 행	박균택의원안	안규백의원안
된 임기를 포함한다) 를 마쳤을 때에는 다 시 그 직위에 임명되 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 되지 <u>아니하면 전역</u> <u>된다. 다만, 유사 직</u> <u>위에 전직된 경우에</u> <u>는 전직 후 2년이 지</u> <u>났을 때에 전역된다.</u> ④ · ⑤ (생략)	----- ----- ----- ----- ----- ---<u>아니하면 전역되</u> <u>고, 유사 직위에 전직</u> <u>된 경우에는 전직 후</u> <u>2년이 지났을 때에</u> <u>전역된다. 다만, 제17</u> <u>조의2제1항제2호 및</u> <u>제3호에 따라 징계</u> <u>및 조사·수사의 사</u> <u>유로 보직해임된 경</u> <u>우는 전역되지 아니</u> <u>한다.</u> ④ · ⑤ (현행과 같음)	----- ----- ----- ----- ----- ---. -----<u>유사직위</u> <u>에</u>----- ----- -----<u>전역되며, 제1</u> <u>7조의2제1항제2호 또</u> <u>는 제3호에 해당하는</u> <u>사유로 보직해임된</u> <u>경우에는 그러하지</u> <u>아니하다.</u> ④ · ⑤ (현행과 같음)

□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중장 이상의 중요 부서의 장, 병과장의 경우 법 제16조의2와 별도로 각 조문에서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된 경우 등에는 자동으로 전역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앞선 논의와 마찬가지로,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 자동으로 전역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군 내부에서 수사하거나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앞선 개정안 제16조의2 내용에 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개정안 단서에 징계 및 조사·수사라는 사유를 명시하는 것은 이미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해당 문구를 별도로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각 개정안 조문들의 단서는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한편, 개정안들에서 규정하지 아니하였지만 법 제24조의2의 임기제 진급자¹²⁾의 경우에도 보직해임 시 자동 전역되는 문제는 동일하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자동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며, ‘수사 및 징계의 사유로 직위 또는 보직에서 해임된 경우’라는 표현은 모호할 수 있어 법 제17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임기제 진급자의 보직해임 시 자동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2) 「군인사법」 제24조의2(임기제 진급) ①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급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보직(再補職) 및 전직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한다.

문 의 처
02)6788-5310